

의안번호	2204509
의 퇴 인	배준영의원
회 답 일	2024. 10.25.
추 계 번호	24D419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9년 22억 8,800만원, 2033년 23억 1,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22억 7,700만원(연평균 24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9~2033년

(단위: 백만원)

	2029	2030	2031	2032	2033	계	연평균
인천고등법원 설치 (안 [별표1](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등)	2,288	2,509	2,560	2,608	2,312	12,277	2,455

주: 1. 인천고등법원 설치(안 [별표1], [별표3], [별표5])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신설 되면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인천고등검찰청도 같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유사사례인 대구고등법원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9년의 추가재정소요는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별표1](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5](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인천광역시와 부천시·김포시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설치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별표1](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5](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이 신설되면 「검찰청법」 제3조¹⁾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인천고등검찰청도 같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함
 - 인천고등법원과 인천고등검찰청이 설치되면 현행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담당하던 사건, 수사 등이 이관되므로 각 기관의 직원 중 일부가 재배치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현행 6개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현황 등을 활용하여 인천고등법원 및 인천고등검찰청 공무원 정원, 청사 대지 및 연면적 등을 추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인천고등법원 및 인천고등검찰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각각 7명, 22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 개정안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이 신설될 경우 관할 인구수는 427만 5,228명²⁾으로 추정되고, 현행 6개 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의 공무원 1인당 관

1)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이를 설치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2)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2024년 9월 말 기준)에서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의 인구 합계

할 인구수로 인천고등법원의 예상 관할 인구수를 나누면 공무원 정원은 인천고등법원 78명, 인천고등검찰청 42명³⁾으로 예상됨

- 서울고등법원에서 71명, 서울고등검찰청에서 20명이 전입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른 공무원 증원 인원은 인천고등법원 7명, 인천고등검찰청 22명⁴⁾으로 추정
- 청사의 경우, 현행 6개 고등법원과 검찰청이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청사를 사용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른 공무원 증원 규모가 크지 않아 현행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청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증원규모를 반영하여 현행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의 1인당 연면적을 산출한 결과 현행 6개 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의 1인당 연면적 평균값과 유사하거나 최소값보다는 커 합동으로 청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인천고등법원과 인천고등검찰청이 설치되는 경우 판사와 검사가 증원될 수 있으나, 판·검사의 증원여부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면적 산정과 증원 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물가상승률⁵⁾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개정안 부칙에서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9년부터 2033년까지 5년으로 함

3) 현행 6개 고등법원 및 고등검찰청의 공무원 1인당 관할 인구수는 각각 54,560명, 100,601명이고 인천고등법원의 예상 관할 인구 수는 4,275,228명으로 이를 활용하여 공무원 정원을 추정하면 인천고등법원 78명(=4,275,228명÷54,560명), 인천고등검찰청 42명(=4,275,228명÷100,601명)

4) 법무부의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 단독사건 누년비교표에서 서울고등법원 관내에 해당하는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춘천지방법원 접수건수는 2023년 기준 총 135,771건이고 이 중에 인천지방법원은 17,687건으로 인천시 관련 사건의 비율은 13%로 추정되어 현행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정원(각각 543명, 155명)에 적용하면 전입되는 공무원 수는 각각 71명, 20명으로 추정. 따라서 공무원 증원인원은 인천고등법원 7명(=78명-71명), 서울고등검찰청 22명(=42명-20명)으로 예상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7.)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6%	2.2%	2.2%	2.1%	2.1%	2.1%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 인천고등법원과 인천고등검찰청 설치 시 증원이 필요한 공무원 수는 각각 7명, 22명으로 추정되고 직급별 증원 인원은 법원⁶⁾과 법무부⁷⁾ 소속 전체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

[표 2] 인천고등법원과 인천고등검찰청 설치에 따른 직급별 증원 인원 추정
(단위: 명)

직급	직급별 비율		증원 인원	
	법원	법무부	인천고등법원	인천고등검찰청
고위공무원단	0.1%	0.1%	0	0
3급	0.5%	0.1%	0	0
4급	3.1%	1.2%	0	1
5급	10.2%	3.9%	1	1
6급	15.5%	19.8%	1	4
7급	12.0%	34.8%	1	8
8급	22.8%	20.2%	2	4
9급	35.8%	19.9%	2	4
합 계	100%	100%	7	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하는 경우의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추정
 - (보수) 인천고등법원과 인천고등검찰청의 각 직급별 증원 인원⁸⁾에 직급별 1인당 보수를 곱하여 산출
 - － 직급별 보수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202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에 근거하여 봉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
 - － 보수는 2024년 2.5%, 이후에는 최근 3년(2022~2024년) 공무원 보수 평균상승률 1.9% 적용

6) 대법원의 '2023년 사법연감'의 법원공무원 정원 통계에 근거함

7) 인사혁신처의 '2024년 인사통계연보'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 통계에 근거함

[표 3] 직급별 1인당 보수 추정: 2023~2033년

(단위: 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대법원	5급	8,138	8,341	8,500	8,661	8,826	8,994	9,165	9,339	9,516	9,697	9,697
	6급	7,001	7,176	7,312	7,451	7,593	7,737	7,884	8,034	8,187	8,342	8,342
	7급	6,042	6,193	6,311	6,431	6,553	6,677	6,804	6,933	7,065	7,199	7,199
	8급	4,726	4,844	4,936	5,030	5,126	5,223	5,322	5,423	5,526	5,631	5,631
	9급	4,087	4,189	4,269	4,350	4,433	4,517	4,603	4,690	4,779	4,870	4,870
법무부	4급	10,873	11,145	11,357	11,572	11,792	12,016	12,245	12,477	12,714	12,956	12,956
	5급	8,543	8,757	8,923	9,092	9,265	9,441	9,621	9,803	9,990	10,180	10,180
	6급	7,736	7,929	8,080	8,234	8,390	8,549	8,712	8,877	9,046	9,218	9,218
	7급	6,561	6,725	6,853	6,983	7,116	7,251	7,389	7,529	7,672	7,818	7,818
	8급	5,410	5,545	5,651	5,758	5,867	5,979	6,092	6,208	6,326	6,446	6,446
	9급	4,749	4,868	4,960	5,054	5,150	5,248	5,348	5,450	5,553	5,659	5,6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공무원 증원에 따른 보수 추정: 2029~203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9	2030	2031	2032	2033
인천고등법원	5급	76	93	95	97	97
	6급	66	80	82	83	83
	7급	57	69	71	72	72
	8급	89	108	111	113	113
	9급	77	94	96	97	97
	소계	365	444	455	462	462
인천고등검찰청	4급	102	125	127	130	130
	5급	80	98	100	102	102
	6급	290	355	362	369	369
	7급	493	602	614	625	625
	8급	203	248	253	258	258
	9급	178	218	222	226	226
	소계	1,346	1,646	1,678	1,710	1,710

주: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9년은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추정된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
요율⁸⁾을 곱하여 산출
- (기본경비) 추정된 보수에 2024년 예산 기준 대법원과 법무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6.2%, 6.5%를 곱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 2029년 한 해에만 자산취득비가 발생하며 공무원 증원 인원
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1인당 자산취득비(534만원)를 곱하여 산출

8) 2029년 13.5%, 2030년 이후 13.6%

[표 5]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추정: 2029~203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9	2030	2031	2032	2033
인천 고등법원	보수(a)	365	444	455	462	462
	기관부담금(=a×요율)	49	60	62	63	0
	기본경비(=a×6.2%)	23	28	28	29	29
	자산취득비	118				
	소계	555	532	545	554	491
인천 고등검찰청	보수(b)	1,346	1,646	1,678	1,710	1,710
	기관부담금(=b×요율)	182	224	228	233	0
	기본경비(=b×6.5%)	87	107	109	111	111
	자산취득비	118				
	소계	1,733	1,977	2,015	2,054	1,821
합계		2,288	2,509	2,560	2,608	2,312

주: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9년은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인천고등법원과 인천고등검찰청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9년 22억 8,800만원, 2033년 23억 1,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22억 7,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9~203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인천고등법원	555	532	545	554	491	2,677
인천고등검찰청	1,733	1,977	2,015	2,054	1,821	9,600
합계	2,288	2,509	2,560	2,608	2,312	12,277

주: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9년은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현행 6개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의 공무원 정원, 관할 인구 수, 연면적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